

#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디지털 및 순환 경제에 따른 규정을 중심으로

김윤명



#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디지털 및 순환 경제에 따른 규정을 중심으로

김윤명

상명대학교 특임교수, 법학박사

## 요약문

## S U M M A R Y

- EU의 제조물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개정안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및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더 잘 작동하도록 40년이 넘는 제조물책임 관련 제반 규칙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시스템 또는 디지털 제조파일과 같은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조물에 포함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계속하여 효과적인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EU 전체의 조화로운 규정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조물책임지침에 대한 영향평가를 반영하였음
  
- 인공지능이 산업이나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제조산업이 소프트웨어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제조물의 책임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임
  - 1985년 제조물책임지침이 시행될 당시의 산업환경과 지금의 환경의 차이가 크며, 무엇보다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점이고 소프트웨어로 패키지 형태가 아닌 웹에서 다운로드받는 형태나 클라우드 방식의 접속형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큰 변화는 경제활동이나 산업활동에서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가 주요 요소가 되면서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나 디지털제조 파일과 같은 개념이 들어간 것임
  - 인공지능이 활용되거나 인공지능에 의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것임

- 인공지능이 블랙박스화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을 인간이 확인하거나 제작자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사고에 대한 책임을 AI개발자 내지 제조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임
-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공지능이 포함되었다면 제조물성에 관계없이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임
- 개정안은 인공지능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원칙을 적극적으로 제조자 영역에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한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디지털 및 순환 경제에 따른 규정을 중심으로

# 목차

## C O N T E N T S

#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디지털 및 순환 경제에 따른 규정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07
II. 1985년 PLD에 대한 영향평가	09
1. EU PLD의 책임원칙	09
2. 영향평가의 진행	09
3. 영향평가에서 밝힌 1985년 PLD의 한계	10
4. 영향평가에 따른 제안 사항	11
III. PLD 개정안의 특징	13
1. 다른 유럽연합 정책과의 일치	13
2. 비례의 원칙	14
3. 이해관계자의 협의	15
4. 시법(안) 및 시책임지침(안)과의 관계	17
IV. PLD 개정안의 주요 내용	19
1. 일반 규칙	19
2. 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21
3. 책임에 대한 일반 규정	32
4. 최종 규정	36
V.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한계 및 시사점	39
1. 디지털전환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한계	39
2. 개정 PLD가 가져올 시사점	40
참고문헌	43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디지털 및 순환 경제에 따른 규정을 중심으로

---



# I. 들어가며

- 1985년부터 시행된 EU 제조물책임 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이하 PLD라 함)은 사람들이 제품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을 제공해왔지만, 제조물의 책임범위는 전통적인 제조물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왔음
  -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은 책임범위의 적극적인 확장이 아닌 제한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조물책임 논의는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러한 논의는 제조물 책임법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입법 목적이나 취지가 고려되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할 것임
- 현재의 규정은 제조물이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결함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결함 있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 또는 결함 있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불분명함
  -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조물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소비자가 유럽연합 외부에서 직접 제품을 수입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마케팅할 때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어렵고, 손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PLD 개정안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제조물에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임
- 무엇보다, 제조물책임법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과실책임의 전환으로 전문가의 영역에 있거나 또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소비자인 피해자가 관련 정보를 확보하거나 기술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임
  - 제조물책임법리는 얇은 손해전보가 아닌 깊은 손해의 전보를 통하여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 그 취

## 지이기 때문임

□ 제안된 PLD 개정안<sup>1</sup>은 제조물의 정의에 모든 동산이외에 새롭게 전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형태의 동산을 의미하는 디지털 제조파일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순환경제(circular economy)<sup>2</sup> 및 글로벌 가치사슬이 잘 작동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나 AI 시스템 또는 제품 관련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제품은 제조물책임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임
- 인공지능이 산업이나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 등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산업이 SW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PLD개정안은 SW안전을 넘어서 AI의 블랙박스에 따른 책임 원칙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것임<sup>3</sup>
- 이를 위하여 EU는 AI책임지침안, AI법안, PLD 등의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PLD 개정안에 포함된 SW 및 디지털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2022/0302(COD), 28.9.2022.

2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경제 시스템을 말하며, 자원을 사용한 뒤 버리고 끝나는 직선적인 접근(Linear Economy)이 아니라,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을 위한 경제이다. GS칼텍스 미디어허브, <https://gscaltexmediahub.com/story/magazine-gscaltex-circular-economy/>, 2022.11.22. 접속

3 디지털 시대의 제품은 유형적일 수도 있고 무형일 수도 있다. 운영 체제, 펌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또는 AI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시장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제품 안전을 위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프트웨어는 독립형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이후 구성 요소로 다른 제품에 통합될 수 있으며, 실행을 통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확실성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공급 또는 사용 방식에 관계없이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기 위한 제품이며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장치에 저장되거나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액세스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소프트웨어가 제품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순수한 정보이므로 본 지침의 목적상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규제(EU) .../(AI Act)]의 의미에 해당하는 AI 시스템 제공자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자(developer)나 생산자(producer)는 제조자로 취급되어야 한다(recital 12).

## II.

# 1985년 PLD에 대한 영향평가

### 1. EU PLD의 책임원칙

□ 제조자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원칙

- PLD 제1조 목적조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 PLD 전문에 무과실책임만이 최신 기술에 내재한 위험의 공평한 분배, 전문성에 대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규정
-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당사자간 별도의 계약관계의 성립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결함의 여부만이 제조자에게 책임을 귀속<sup>4</sup>

### 2. 영향평가의 진행

□ 기본적으로 PLD의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적인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상하기 위한 EU 차원의 법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1985년 PLD 채택 이후, 제조물의 안전 및 시장 조사 규칙을 포함하여 제조물의 생산, 유통, 작동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

<sup>4</sup> 권오승 외,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2, 80면.

- 스마트 제조물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생산성 및 편의성 향상을 통해 원자재와 제조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친환경 및 디지털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며 유럽 사회 및 경제에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왔으며,
- 이런 상황에서 2018년 PLD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정적합성 프로그램(Regulatory fitness-check programme, REFIT)의 일환으로 시행되었고, PLD가 전체적으로 효과적이고 유의미하다고 평가됨<sup>5</sup>

### 3. 영향평가에서 밝힌 1985년 PLD의 한계

□ 영향평가에 따른 현행 PLD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현대적인 디지털경제 및 순환경제에서 40년이 되어가는 PLD 규정의 정의 및 제조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지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임
  - 예를 들면, 스마트 디바이스 및 자율 자동차처럼 기능을 위해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물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며, 유체물에 내장된(embedded) 경우라면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독립된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음<sup>6</sup>
- 둘째, 입증 책임(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이 결함이 손해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한 입증 필요)은 복잡한 사례에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렵다고 할 것임
  - 예를 들면, 의약품, 스마트 제조물 또는 AI 기반 제조물들과 관련된 사례에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거나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임
- 셋째, 1985년 PLD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였음
  - 예를 들면, 현행 PLD 하에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피해자는 500유로 이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음<sup>7</sup>

<sup>5</sup> Evaluation of Product Liability Directive, SWD(2018)157.

<sup>6</sup> 이러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동일하며, 소프트웨어의 무체물성에 따라 제조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SoC와 같이 임베디드된 경우라면 제조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SW가 매체에 따라 속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PLD 개정안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sup>7</sup> 현행 PLD 제9조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500유로에 대해서는 면책한다. (i) 통상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ii) 피해자가 주로 자신의 개인적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

#### 4. 영향평가에 따른 제안 사항

##### 가. 영향평가에서는 디지털 시대 및 순환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3가지 옵션(옵션 1)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문제를 다루는 2가지 옵션(옵션 2)을 제안

- (옵션 1a)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서비스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제조물을 제조하는 제조자들이 지침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유형의 구성요소(component)<sup>8</sup> 처럼, 무형의 디지털 요소의 제공자들도 제조자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되지만,
    - 이 옵션에 따르면, 단독 소프트웨어(standalone software)의 개발자(producer)는 PLD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됨
  
- (옵션 1b) 옵션 1a를 기반으로 하며, 추가로 제조물에 부가된 제3자 소프트웨어 또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단독 소프트웨어(의료용 기기 스마트폰 앱 같이)를 포함한 관련 소프트웨어 자체가 전부 포함될 것임
  - 제조물을 상당히 수정하고 시장에 재출시하는 경우도 또한 지침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이며,
    - 이 옵션에 따르면, non-EU 제조자에게 인가받은 유럽 대리인 또는 이행 서비스 제공자도 EU 내에 수입자가 없을 때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음
  
- (옵션 1c) 옵션 1b의 조치를 포함하며, 이에 더해 개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
  - 데이터 보호 위반, 사생활 침해나 AI 채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차별과 같은 기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임
  
- (옵션 2a)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
  - (i) 제조자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공개가 필요한 기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

8 개정안의 정의에 따르면 (3) 구성요소이라 함은 유형 또는 무형을 불문하고, 제조자의 통제 내에서 또는 해당 제조물의 제조자에 의해 제조물에 통합되어 있거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항목, 또는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 (ii) 특히 복잡한 사건에서 입증에 매우 어려운 경우, 제조물에 실제로 결함이 있었거나 그 결함이 실제로 손해를 야기했다고 자국 법원이 추정하는 조건을 규정
- (옵션 2b) 입증책임을 전환해서 제조물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고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자는 제조자임을 명확히 함
  - 최신 지식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제조자를 면책시키는 개발위험의 항변 (development risk defence)은 삭제되며,<sup>9</sup>
  - 추가로 손해배상 제한 금액 및 소멸시효에 대한 제약도 줄였음(금액 기준 및 시효에 대한 제한)

#### 나. 영향 평가는 옵션 1b 및 2a를 선호되는 조합이라고 보았음

- 옵션 1b는 어떤 제조물과 제조자가 무과실 책임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법적 확실성을 부여할 것이며,
  - non-EU 제조자를 포함한 모든 제조자가 배상책임 발생을 피하기 위해 EU 시장에 안전한 제조물만 출시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이는 제조물 안전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 소비자들은 제조물 결함이 제조물의 디지털 또는 유형적 구성요소와 관련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리고 결함있는 단독 소프트웨어 자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 소프트웨어 제공자, 유럽내 대리인, 이행 서비스 제공자를 PLD의 범위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면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평가됨

<sup>9</sup> 다만, 개발위험의 항변은 산업계의 요구로 유지되었다. 실상, 개발위험의 항변은 제조물책임법리에서 제조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면책 규정이기도 하다.

# III.

## PLD 개정안의 특징

### 1. 다른 유럽연합 정책과의 일치

- 디지털 기술과 연결된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조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EU는 기계, 무선 기기, 일반 제조물 안전에 대한 규칙을 현대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믿음만한 AI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음
  - 개정안은 제조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 피해자의 권리가 존중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비즈니스를 할 때 직면하는 배상 위험에 대해 해당 비즈니스가 법적 확실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대한 미흡한 점을 보완
  
- 디지털 환경에 대한 노력은 회원국민의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을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노력은 공정경제 및 경쟁경제, 갈등 없는 단일 시장에 기여해야 하며,
    - 모든 규모나 부문의 기업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고,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규모로 디지털 기술,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출시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AI 관점에서, 개정안은 AI 시스템과 AI 기반 제조물은 제조물이며 따라서 PLD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이는 AI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다른 제조물과 마찬가지로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 둘째, 개정안은 하드웨어 제조자들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공급자들

- 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네비게이션 서비스처럼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들도 책임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 셋째, 개정안은 제조자들은 이미 시장에 출시한 제품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업데이트할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 이러한 개정에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도 포함됨
  - 넷째, 개정안은 AI 시스템과 관련된 특정 사례와 제품이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사례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며,
    - 이로써 책임 규칙이 AI에 적용됨을 확실히 하기 위한 유럽의회에 요구에 대체로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됨

## 2. 비례의 원칙

- 개정안은 산업계와 소비자 간 이익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어떤 제품과 비즈니스가 무과실 책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부여함
  - 또한, EU 비회원국의 제조자들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책임 발생을 피하기 위해 EU 시장에 안전한 제품만 출시할 것을 장려함
- 개정안은 결함있는 제품이 유형인지 디지털인지 형태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나 책임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소프트웨어 제공자, 제품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사업자, 유럽 대리인 및 이행 서비스 제공자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EU의 제품책임의 범위를 확장
    - 이로써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도 공평한 경쟁의 장이 확립될 것임
  - 아울러, 데이터 손실, 파손, 또는 오염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를 인정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이는 Data Governance Act에 따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가 갖는 경제적인 효용성을 인정



하면서도 보호 등의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정안은 법적 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EU의 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공평한 수준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복잡한 사례에서 피해자들과 제조자들 사이에 입증책임을 더욱 공정하게 부담시킬 것이며, 이로써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반면, 이는 제조자들에게 상당히 큰 책임에 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혁신을 방해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제조물 가격의 상승 및 혁신적인 제조물에 대한 접근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음

### 3. 이해관계자의 협의

- 개정안을 준비함에 있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및 각국의 소비자 단체, 산업계, NGO, 로펌, 전문가, 공공 기관 및 국가 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였으며, PLD 개정안의 각 특정 목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책임 규칙이 디지털 시대의 제조물 및 순환경제의 특성과 위험을 반영하게 하려는 목적
  -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소프트웨어가 PLD의 범위에 속하는 제조물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데 찬성하였으나,
    - 산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은 PLD 개정안을 입법하는 것보다는 구속력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음
  - 제조물은 사이버보안 취약성에 있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데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
    - 의견 청취시 응답자들의 70%는 그러한 취약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에 실패한 책임을 제조자에게 묻는 것에 대해 찬성
  -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은 PLD에 데이터 보호 위반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포함시키는데 반대했는데, 이는 이미 GDPR 같은 다른 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소비자 단체, 공공기관 및 NGO들은 이를 포함시키는데 더 많은 수가 찬성하였음
  - 상당 부분 수정된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러한 수정을 한 '경제적 운영자'<sup>10</sup>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찬성하였음
- EU영역 밖에 있는 제조자들로부터 공급받은 결함있는 제조물에 대해 EU에 기반을 둔 사업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려는 목적
- 의견 청취에서, 응답자의 64%는 EU 기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EU 비회원국에서 직접 들어온 결함 있는 제조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
  - non-EU 제조자들로부터 허가받은 대표자, 이행 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갈림
- 제조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공정한 균형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잡한 사건에서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청구에 대한 제약을 완화시키려는 목적
- 의견 청취에서, 응답자의 77%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조물은 피해자의 입증책임 관점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
    - 이 비율은 비즈니스 및 산업 기관(38%)보다 소비자 단체, NGO, 공공기관에서 더 높았음(95%)
  -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은 정보공개 의무에 더 열려있었고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보다는 복잡한 사건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했는데, 혁신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급진적 선택으로 인식
    - 산업계 및 소비자 단체, 법률 전문가의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PLD의 기술 중립적 접근을 유지하는데 찬성했으나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개발위험항변을 삭제하는데 반대
  - 소비자 단체, NGO, 공공기관은 500 유로 이하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데 찬성
    - 제조자들이 결함 있는 제조물을 시장에 출시한 후, 해당 제조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찬성
    -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은 제약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찬성

10 PLD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운영자'라 함은 제조물 또는 구성요소의 제조자, 관련 서비스의 제공자, 유럽 대리인, 수입자, 이행 서비스 제공자 또는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 4. 시법(안) 및 시책임지침(안)과의 관계

### □ 시법(안)과의 관계<sup>11</sup>

- 2021년 4월 인공지능 규제법안인 시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AI 시스템의 설계별 로깅 및 사이버 보안 기능을 포함하여 높은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
- PLD 개정안은 법원이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시법안에 명시된 것을 포함해 모든 의무적인 안전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PLD 개정안은 또한 AI 시스템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이라는 점에서 AI 시스템에 결함이 있어 사망, 개인 상해, 재산 피해 또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상자는 PLD를 이용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무엇보다, PLD 개정안은 기업들이 AI 기술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법적 확실성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향후 시가 가능한 제품의 사용을 장려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호방안을 제공할 것임

### □ AI 책임지침(안)과의 관계<sup>12</sup>

- AI Liability Directive(AI 책임지침)의 목적은 AI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정보에 대한 액세스 및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고 피해자(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확립하고 시를 육성하는 것임
- AI 책임지침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을 도입하여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때 피해자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함
  - (인과관계의 추정) 복잡한 AI 시스템을 이해하고 탐색하려고 할 때 특히 어려울 수 있는 특정 결함이나 누락으로 인해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피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것
  - (증거에 대한 접근권) 피해자는 고위험 시가 관련된 경우 제조자로부터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여 법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더 많은 수단을 갖게 될 것

<sup>11</sup>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2022.9.2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5791](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5791).<2022.11.22. 접속>

<sup>12</sup> Questions & Answers: AI Liability Directive, 2022.9.2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5793](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5793) <2022.11.22. 접속>

- AI를 사용하면 결함을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법안에서 규정된 ' 위험 AI 시스템 공급자'에게 법원은 관련 제품에 대한 필요한 증거를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PLD는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한 제조자의 손해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및 AI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제품을 포괄함
- 모든 회원국은 피해자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그 피해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결함기반 책임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경우 AI 시스템에 의한 손해와 관련된 경우, 제안된 AI 책임 지침은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가능함
- 청구인들이 관련된 AI 시스템의 불투명성 때문에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

# IV.

## PLD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일반 규칙

- (특징)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제조 파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서 기술 중립적인 방식으로 제조물의 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배상이 가능한 손해의 개념에 데이터의 손실 또는 오염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 가. 제조물의 정의 및 유형(제4조)

##### (1) 취지

- 제조물의 개념 및 유형을 확장하고 있음
  - 제조물의 개념을 디지털 제조파일,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사업자까지도 책임 범위에 포함
    - 제조물은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통합되어 있더라도 모든 동산으로 정의하면서, 전기, 디지털 제조 파일,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sup>13</sup>
    - 디지털 제조 파일이라 함은 디지털 버전 또는 디지털 형태의 동산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네비게이션이나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제조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

<sup>13</sup> 현행 PLD 제2조. 본 지침에서 '제품'이란 모든 동산을 의미하며, 그 동산이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품'에는 전기도 포함한다.

-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성요소(component)에 대해 정의
  - 구성요소란 유형 또는 무형을 불문하고, 제조자의 통제 내에서 또는 해당 제조물의 제조자에 의해 제조물에 통합되어 있거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 여하한 항목 또는 관련 서비스를 의미하며,
  - 관련 서비스라 함은 당해 서비스가 없는 경우 제조물의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조물에 통합되어 있거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의미함
- 손해의 개념에 Data Governance Act<sup>14</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의 손실(loss)이나 오염(corruption)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
  - 데이터의 손실이나 오염은 원래의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제3의 데이터가 포함됨으로써 원래 의도했던 데이터의 성질이 변화한 것을 의미함

## (2) 개정안

-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통합되어 있더라도, 모든 동산을 의미한다. '제조물'은 전기, 디지털 제조 파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 (2) '디지털 제조 파일'이라 함은 디지털 버전 또는 디지털 형태의 동산을 의미한다.
- (3) '구성요소'라 함은, 유형 또는 무형을 불문하고, 제조자의 통제 내에서 또는 해당 제조물의 제조자에 의해 제조물에 통합되어 있거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 여하한 항목, 또는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 (4) '관련 서비스'라 함은 당해 서비스가 없는 경우 제조물의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조물에 통합되어 있거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의미한다;
- (5) '제조자의 통제'라 함은 제조물의 제조자가 a) 제3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는 구성요소를 통합, 상호 연결 또는 공급을 허가하거나 b) 제조물의 수정을 허가함을 의미한다;
- (6) '손해'라 함은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손실을 의미한다:
- (c) 상업적 목적에만 독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의 손실 또는 오염;
- (7) '데이터'는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규정 (EU) 2022/86815의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sup>14</sup> Data Governance Act 제2조 (1)'데이터'는 행위, 사실 또는 정보의 디지털 표현 및 그러한 행위, 사실 또는 정보의 편집물을 의미하며 소리, 시각 또는 시청각 기록의 형태를 포함한다.

<sup>15</sup> Regulation (EU) 2022/86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European data governance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Data Governance Act) (OJ L 152, 3.6.2022, p. 1).

- (11) '제조자'는 제조물을 개발, 제조, 또는 생산하거나 또는, 제조물을 설계 또는 제조하도록 하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로 제조물을 판매하거나, 또는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 제조물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 (17) '온라인 플랫폼' 이라 함은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단일 시장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U)···/··· (디지털 서비스 법)+의 제2조(h)에 정의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 2. 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 (특징)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을 관할하는 규칙과 자연인이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는 조건에 대해 규정
-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경제적 운영자의 범위는 유럽연합 밖에서 제조되고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된 제조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제적 운영자가 유럽연합 내에 항상 상주하도록 함
  - 순환 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맥락에서처럼, 제조물에 수정을 한 경제적 운영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입증책임의 부담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특히 복잡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면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산업계 및 소비자간의 이익에 대한 공평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가. 결함(제6조)

#### (1) 취지

- 안전성 결여를 의미하는 결함에 대한 판단
- 소비자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 결함은 사용 적합성이 아니라 대중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를 참조하여 판단
  - 결함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정인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참고로 해서 아니며,
    - 일반적으로 대중이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은 특히 의도된 목적, 해당 제품의 객관적 특징 및 특성, 그리고 제품이 의도하는 이용자층의 특정한 요건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함

- 생명유지를 위한 의료기기와 같은 일부 제품은 손해를 입힐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기준이 특별히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며, 법원은 이미 결함이 입증된 제품과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실제 결함을 입증하지 않고도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사이버보안 요건을 포함한 제조물 안전 요건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나 시의 오류나 결함으로 인하여 외부적인 해킹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결함으로 인정할 수 있음<sup>16</sup>

#### □ 후속조치 등에 대한 판단

- 소비자의 이익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더 나은 제조물이 시장에서 존재한다거나 제조물이 후속 출시가 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해당 제조물이 결함이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며,
- 제조물에 대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제공되는 경우, 그 제조물의 이전 버전에 결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

## (2) 개정안

1. 다음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기대하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간주된다:
  - (a) 설치, 이용, 유지보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제조물에 대한 설명;
  - (b)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제조물의 이용 및 잘못된 이용;
  - (c)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제조물에 미치는 영향;
  - (d) 당해 제조물과 함께 이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제조물이 당해 제조물에 미치는 영향;
  - (e) 제조물이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서비스가 개시된 시점 또는 그 시점 이후 제조자가 제조물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경우 제조물이 제조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시점;
  - (f) 안전성 관련 사이버보안 요건을 포함한 제조물 안전 요건;
  - (g) 제조물 안전과 관련해서 제7조에서 언급하는 경제적 운영자 또는 규제 당국의 간섭
  - (h) 제조물이 의도하고 있는 최종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기대.
2. 제조물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포함, 더 나은 제조물이 이미 또는 후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서비스를 개시하였다는 유일한 이유만으로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16 이에 대해서는 7. 책임의 면제(제10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함



## 나. 경제적 운영자들의 제조물책임(제7조)

### (1) 취지

#### □ 제조자의 개념을 producer에서 manufacture로 확장

- 개정된 제조자의 정의는 제조물을 개발, 제조, 또는 생산하거나 또는 제조물을 설계 또는 제조하도록 하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로 제조물을 판매하거나 또는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 제조물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
  - 1985년 PLD에서는 제조자를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자 및 제품에 그 성명, 상표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조자로 표시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판매, 대여, 리스, 기타 유통을 목적으로 유럽공동체 안에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자는 본 지침상 그 제품의 생산자로 간주되며, 제품의 생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공급자를 생산자로 간주(제3조)
- 제조물이 개념이 SW와 디지털 제조파일까지 포함됨에 따라, 제조자의 범주가 소프트웨어 공급자,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까지 확장

#### □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sup>17</sup>

- 제조기업이 유럽연합 밖에 설립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제조물의 수입자 및 제조자로부터 허가받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
- 제조자, 수입자, 유럽 대리인, 이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효과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유통업자들이 유럽연합 내에 기반을 둔 관련 경제적 운영자를 즉시 식별하지 못할 경우에만 유통업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sup>17</sup> 제조 기업이 유럽연합 밖에 설립되어 있는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제조물의 수입자 및 제조자로부터 허가받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시장 감시에 대한 실제 경험은, 공급망은 때때로 경제적 운영자가 기존의 법적인 틀에 따른 전통적인 공급망에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운영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수입자들과 동일한 수많은 기능을 수행하되 항상 유럽연합 법에 따른 수입자의 전통적 정의에 상응하지는 않는 이행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가 해당된다. 제조물 안전성 및 시장 감시 틀에서 경제적 운영자로서의 이행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행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역할의 부수적인 성질을 고려할 때 이들은 유럽연합에 기반을 둔 수입자 또는 유럽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제조자, 수입자, 유럽 대리인, 이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효과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유통업자들이 유럽연합 내에 기반을 둔 관련 경제적 운영자를 즉시 식별하지 못할 경우에만 유통업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recital 27).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의 제책임<sup>18</sup>

- 온라인 유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행위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이 결합있는 제조물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이들은 해당 경제적 운영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책임을 지도록 함

□ 소프트웨어 등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책임<sup>19</sup>

- 기술발전에 따라 제조물의 내구성은 좋아지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수리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므로 제조물은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의 변경을 통해 수정이 가능
- 제조물이 원래의 '제조자의 통제'<sup>20</sup> 밖에서 상당히 수정되는 경우, 새로운 제조물로 간주되며 이 같이 수정을 한 자는 수정된 제조물의 제조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함
- 또한, 소프트웨어 등의 업그레이드는 지속적인 관찰의무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독일제조물책임법상의 관찰의무가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sup>21</sup>

18 온라인 판매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같은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행위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결합있는 제조물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이들은 해당 경제적 운영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자와 소비자 사이의 제조물 판매에 있어 단지 중개인 역할만 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서비스 법에 따른 조건부 면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디지털 서비스 법은 보통의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 자체 또는 플랫폼의 권한이나 통제 하에 행위하는 거래자가 제조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방식으로 제조물을 제시하거나 특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 소비자들과 거래자들이 원거리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제조물을 제시하거나 다른 식으로 특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른 유통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제조물을 제시하거나 다른 식으로 특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및 유럽연합 내에 기반을 둔 관련 경제적 운영자를 즉각 식별하지 못한 경우에만 온라인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recital 28).

19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전환되면서, 제조물은 더욱 내구성이 좋아지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수리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유럽연합은 재생, 개선 및 수리 같이 제조물과 구성요소의 기능을 연장하는 제조와 소비에 있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장려하고 있다. 게다가, 제조물은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의 변경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제조물이 원래의 제조자의 통제 밖에서 상당히 수정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제조물로 간주되며 이 같이 수정을 한 자는 수정된 제조물의 제조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유럽연합의 관련 법에 따라 이러한 자들에게는 안전 요건에 맞는 제조물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의 제조물이 의도한 기능을 변경하거나 관련 안전 요건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수정처럼, 유럽 연합 및 각 국가별 안전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수정이 상당하지 여부가 결정된다. 순환 경제에서 위험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상당한 수정을 가한 경제적 운영자가 제조물로 인한 손해가 수정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상당한 수정과 관련 없는 수리 또는 기타 운용을 수행하는 경제적 운영자들은 이 지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recital 29).

20 제2조 정의에 따르면, (5) '제조자의 통제'란 제조물의 제조자가 a) 제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는 구성요소를 통한, 상호 연결 또는 공급을 허가하거나 b) 제조물의 수정을 허가함을 의미한다.

21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2) 개정안

1. 회원국들은 결함 있는 제조물의 제조자들은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결함 있는 구성요소로 인해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결함 있는 구성요소의 제조자들도 같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2. 회원국들은 결함 있는 제조물의 제조자가 유럽연합 밖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제조물의 수입자 및 유럽 대리인이 그 제조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3. 회원국들은 결함 있는 제조물의 제조자가 유럽연합 밖에 기반을 두고 있고 상기 2에서 말한 경제적 운영자들 중 아무도 유럽연합 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이행 서비스 제공자가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4. 시장에 이미 출시되었거나 서비스를 개시한 제조물을 수정한 자연인 또는 법인, 그 수정이 관련 제조물 안전에 대한 유럽연합 법 또는 각 개별국가의 규정에 의해 상당하며 원 제조자의 통제 밖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 경우, 상기 1의 목적에 비추어 그 제조물의 제조자로 간주된다.
5. 회원국들은 상기 1에 따라 제조자를 식별할 수 없거나 제조자가 유럽연합 밖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상기 2 또는 3에 따른 경제적 운영자들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의 각 유통업자들이 다음의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a) 청구인이 유통업자에게 제조물을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자 또는 경제적 운영자를 식별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 (b) 유통업자가 상기 요청을 받고 1개월 내에 제조물을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자 또는 경제적 운영자를 식별하지 못한 경우.
6. 상기 5는, 소비자들이 거래자들과 원거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며,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도 적용된다. 단,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단일 시장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U)···/··· (디지털서비스법) 제6조 제3항<sup>22</sup>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sup>22</sup> 제1항은 소비자가 거래자와 원거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소비자가 거래 대상인 정보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 자체 또는 해당 권한이나 통제 하에 있는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된다고 믿게 만드는 방식이다.

## 다. 증거의 공개(제8조)

### (1) 취지

#### □ 정보비대칭에 따른 증거 공개<sup>23</sup>

- 손해배상 청구인이 기본적으로 제조물의 결함 및 그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
  -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입증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피청구인에 대해 증거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영업비밀<sup>24</sup> 등에 대해서는 보호되어야 할 것임<sup>25</sup>

### (2) 개정안

1. 회원국들은 배상 청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제출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를 입은 자(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각 국가의 법원에게 각 법원의 재량으로 관련 증거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법원들이 상기 1에서 말하는 청구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하며 비례의 원칙 내로 증거의 공개를 제한하도록 한다.

<sup>23</sup> 과실과 관계없는 책임을 경제적 운영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리고 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 제조물의 결함, 이 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손해를 입은 자는 제조물이 어떻게 제조되었으며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이런 정보의 이해에 있어 제조자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은 특히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으로 복잡한 사건에 있어 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recital 30).

<sup>24</sup>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Text with EEA relevance) OJ L 157, 15.6.2016

- 28개 EU 회원국 간 영업비밀의 대상, 보호 방법 및 보호수준 등이 상이하여 효과적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회원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통된 규정 마련
-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도입하여 보호 대상 명확화
- EU 회원국의 사법 당국은 영업비밀 소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침해 의혹 행위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유통·판매 금지 등 예방 및 잠정 조치 시행
- 배상 청구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비밀 불법 취득·사용·유출의 결과로서 발생한 실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적절한(appropriate) 손해배상 의무화\*

\* 악의적이지 않은(without intent) 취득, 사용, 유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한도 지정 가능

<sup>25</sup> 따라서, 청구인이 법적 절차에 사용되는 증거에 용이하게 접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접근은 필수적인 경우 및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해야 하며, 기밀 정보 및 영업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증거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종합하거나 분류하여 피고가 새로 만들어내는 문서들도 포함되어야 한다(recital 31).

3. 공개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한지를 결정할 때, 각 국가의 법원은 관련 제3자를 포함하여, 특히 지침(EU) 2016/943의 제2조 제1항의 의미에 따른 기밀 정보 및 영업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합법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4. 회원국은, 피고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비밀이라고 추정되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각 개별 법원은 당사자들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용되거나 언급되는 정보의 기밀성을 보존하기 위한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게 부여해야 한다.

## 라. 입증책임(제9조)

### (1) 취지

#### □ 기술적, 과학적 복잡성에 비추어 제조물의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추정<sup>26</sup>

-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등은 과학기술의 총아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쉽지 않음
  - 청구인이 입증하기에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제조물의 결함 또는 손해와 결함 간의 인과관계, 또는 둘 다를 추정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 이러한 경우에 까지 청구인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제조자가 손해를 입은 자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조자가 추정을 반박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각 법원에서 결정해야 하며, 다양한 요인에는 혁신적인 의료기기 같은 제조물의 복잡한 특성, 기계학습처럼 이용된 기술의 복잡한 특성, 청구인이 분석해야 하는 정보 및 데이터의 복잡한 특성, 의약품 또는 식품과 질환 발생간 인과관계나 입증을 위해 청구인이 AI 시스템의 내부 작동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연관성처럼 인과관계의 복잡한 특성이 포함됨

<sup>26</sup>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청구인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은 청구인이 갖는 증거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는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며, 이를 통해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존하면서, 결함의 존재 또는 인과관계를 입증된 다른 사실의 존재에 기초할 수 있다.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게 만드는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 각 국가의 법원들은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해야 한다. 수많은 입법적, 강제적 안전 요건들이 위해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와 대중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제조물 안전 규칙 및 제조물책임 규칙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 그러한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결함 추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유럽연합 법이나 자국법에서 요구되는 제조물의 작동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수단이 제조물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정상적인 사용 중에 폭발한 유리병처럼, 결함의 존재가 논란의 여지가 없을만큼 명백한 상황에서는 청구인에게 결함을 입증하도록 부담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백한 오작동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recital 33).

□ AI시스템과 관련된 청구의 경우<sup>27</sup>

- 청구인은 법원으로 하여금 입증을 함에 있어 과도한 어려움이 있다는 결정을 하도록 이를 주장해야 하지만,
  - AI 시스템의 구체적인 특징을 설명하거나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인과관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어렵게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받아서 는 아니됨
- 제조자는 청구인의 과도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도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요구해야 하며,
  - 이는 위험의 공평한 분배의 원칙에 부합하고 입증책임의 전환과 추정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sup>28</sup>

27 또한 각 국가의 법원은, 피고의 정보 공개 의무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기술적, 과학적 복잡성에 비추어 제조물의 결함 또는 인과관계, 또는 이 둘 다를 청구인이 입증하기에는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제조물의 결함 또는 손해와 결함 간의 인과관계, 또는 둘 다를 추정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훼손시킬 것이다. 따라서, 제조자가 손해를 입은 자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조자가 추정을 반박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사안 별로 각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혁신적인 의료 기기 같은 제조물의 복잡한 특성, 머신 러닝처럼 이용된 기술의 복잡한 특성, 청구인이 분석해야 하는 정보 및 데이터의 복잡한 특성, 의약품 또는 식품과 질환 발생간 인과관계나 입증을 위해 청구인이 AI 시스템의 내부 작동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연관성처럼 인과 관계의 복잡한 특성이 포함된다. 과도한 어려움에 대한 판단 역시 사안 별로 각 법원에게 달려있다. 청구인이 과도한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반면, 그러한 어려움을 입증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AI 시스템과 관련된 청구에서, 청구인은 법원으로 하여금 과도한 어려움이 있다는 결정을 하도록 이를 주장해야 하지만, AI 시스템의 구체적인 특징을 설명하거나,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받아서 는 안된다. 피고는 과도한 어려움의 존재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recital 34).

28 위험의 공평한 분배를 유지하고 입증 책임의 전환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은 추정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어려움이 결함의 입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조물이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의 어려움이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결함이 손해의 원인일 수 있다는 충분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주장해야 한다(recital 35).

## (2) 개정안

1. 회원국들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조물의 결함, 발생한 손해, 그리고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2. 제조물의 결함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정되어야 한다:
  - (a) 피고가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명령한 관련 증거를 공개하라는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 (b) 해당 제조물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위험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유럽연합 혹은 개별 국가의 법률에 따른 법적 안전 요건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경우; 또는
  - (c) 정상적 사용 또는 일반적 상황에서 제조물의 명백한 오작동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경우.
3.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한 손해는 당해 결함과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종류의 것이라는 점이 제시된 경우,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는 추정되어야 한다.
4. 각 국가의 법원은, 청구인이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조물의 결함이나,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 또는 이 둘 다를 입증하는데 과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한 경우, 청구인이 충분히 관련있는 증거에 기반하여 다음을 제시하면 제조물의 결함이나,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 또는 두 가지 모두는 추정된다:
  - (a) 제조물이 손해에 기여했고
  - (b)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 결함이 손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인 경우 피고는 상기 첫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과도한 어려움 또는 가능성의 존재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5. 피고는 2, 3, 4에 따른 추정을 반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마. 책임의 면제(제10조)

### (1) 취지

□ '제조자의 통제'<sup>29</sup>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임<sup>30</sup>

29 PLD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자의 통제'라 함은 제조물의 제조자가 a) 제3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는 구성요소를 통합, 상호 연결 또는 공급을 허가하거나 b) 제조물의 수정을 허가함을 의미한다.

30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개시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제조물이 제조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이자 유통업자에게는 그 제조물이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시점이다. 따라서 제조자들은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시장에 출시될 때 또는 서비스를 개시할 때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은 제조물의 시장 출시 또는 서비스 개시 시점 이후에도 제조자들이 통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 또는 머신러닝의 형태로 제조자들의 통제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관련 서비스의 결과로,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제조자들은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한 소프트웨어나 관련 서비스는 제조자들에 의해 제공되거나, 제조자들이 이를 허가하였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3자에 의해 제공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조자의 통제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recital 37).

- 디지털 기술은 제조물의 시장 출시 또는 서비스 개시 시점 이후에도 제조자들이 통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 또는 기계학습의 형태로 제조자들의 통제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관련 서비스’<sup>31</sup>의 결과로,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제조자들은 책임이 유지되어야 하며,
  -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함

#### □ 사이버 보안 취약성 등의 경우에 책임<sup>32</sup>

- 사이버 보안 취약성<sup>33</sup>을 해결하거나 제조물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의 결여가 제조물의 결함인 경우에는
  - 경제적 운영자가 결함이 제조물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발생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되어야 함
- 제조자들은 진화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제조물의 취약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

#### □ (개발위험의 항변) 과학적, 기술적 지식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sup>34</sup>

- 가장 최신의 객관적인 정보를 참고로 판단된 제조자들의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상태로는 결함을 발견

31 PLD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서비스라 함은 당해 서비스가 없는 경우 제조물의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조물에 통합되어 있거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의미한다.

32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해결하거나 제조물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의 결여가 제조물의 결함인 경우에는, 경제적 운영자가 결함이 제조물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발생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한 취약성은 이 지침의 의미 안에서 손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제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7/745 하에서처럼, 제조물의 수명주기 전체에 걸친 안전성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연합 규범에 따른 제조자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제조자들은 진화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제조물의 취약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한 책임은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제공 또는 설치가, 제조물의 소유자가 제조물의 안전성 수준을 보장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제공된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경우처럼, 제조자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recital 38).

33 영향평가에서는 사이버 공격,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패 또는 정보 오용 등의 소프트웨어 취약성은 PLD의 목적상 결함은 제품 안전의 개념과 엄격하게 관련이 있다고 평가한다. Evaluation of Product Liability Directive, SWD(2018)157. p. 56.

34 위험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해당 제조자의 실제 지식이 아닌 접근가능한 가장 최신 수준의 객관적 정보를 참고로 판단된 제조자들의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상태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제조자가 입증한 경우, 이 제조자는 책임에서 면제되어야 한다(recital 39).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조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자는 그 책임에서 면제

- 현행 PLD는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 면책토록 함으로써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향평가에서도 개발위험의 항변을 면책규정에서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유지됨

○ 개발위험의 항변은 기술수준에 대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면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 (2) 개정안

1. 제7조에서 언급된 경제적 운영자가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는 경우, 경제적 운영자는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조물을 시장에 출시하지 않았거나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

(b) 유통업자가 제조물을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지 않았던 경우, 그 유통업자;

(c) 제조물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또는 서비스가 개시되었을 때, 또는 유통업자의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 때,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 결함이 이 시점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d) 공적 기관에서 공포한 강제 규정을 준수함으로 인해 결함이 발생한 경우;

(e) 제조물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가 개시된 때 또는 제조물이 제조자의 통제 안에 있던 기간의 제조자의 객관적인 수준의 과학적, 기술적인 지식이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우, 그 제조자;

(f) 구성요소가 통합된 제조물의 설계 또는 제조물의 제조자가 구성요소의 제조자에게 교부한 지침으로 인해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7조 제1항 두번째 단락의 결함있는 구성요소의 제조자;

(g)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수정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과 관련된 경우,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을 수정한 자.

2. 상기 1의 (c) 규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제조물이 제조자의 통제 내에 있는 한, 제조물의 결함이 다음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a) 관련 서비스;

(b)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또는

(c)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3. 책임에 대한 일반 규정

- 챗터 III는 현행 PLD의 규정에 더하여 일반적인 책임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복수 당사자인 경우에는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제3자의 기여행위로 제조자의 책임이 경감되지는 않지만, 손해를 입은 자의 기여행위가 있는 경우 제조자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소비자 보호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배상액의 한도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가. 복수의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제11조)

##### (1) 취지

- 다수의 경제적 운영자의 동일 손해에 대한 책임
  - 두터운 손해배상을 위하여 결합 있는 구성요소를 제조물에 통합시킨 제조자 및 결합 있는 구성요소를 만든 제조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sup>35</sup>
    - 제조물 또는 구성요소의 제조자, 관련 서비스의 제공자, 유럽 대리인, 수입자, 이행 서비스 제공자 또는 유통업자를 의미하는 경제적 운영자가 일방이 아닌 다양한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형성된 경우에는 어느 일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 이후, 경제적 운영자들 사이에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PLD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되어있으며,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들은 공동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있음(제5조)

##### (2) 개정안

회원국은 둘 이상의 경제적 운영자가 이 지침에 다른 동일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그리고 각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sup>35</sup> 특히 결합이 있는 구성요소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품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처럼,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동일한 손해에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결합 있는 구성요소를 제조물에 통합시킨 제조자 및 결합 있는 구성요소를 만든 제조자 둘 다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은 그러한 경우 공동으로, 그리고 각자 책임을 져야한다(recital 40).

## 나. 책임의 경감(제12조)

### (1) 취지

#### □ 제조물의 결함과 제3자의 책임이 결합된 경우<sup>36</sup>

-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및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결합하여 발생한 경우,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음
  - 이는 제3자가 소프트웨어와 같은 제조물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처럼, 잠재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제적 운영자 외에 개인의 행위 및 부작위가 제조물의 결함에 더해 손해의 원인에 기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의 원인에 부주의하게 기여한 경우,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은 경감되거나 부정될 수 있도록 함

### (2) 개정안

1. 원국은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및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결합하여 발생한 경우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제조물의 결함 및 손해를 입은 자 또는 손해를 입은 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자의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경우,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은 경감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

<sup>36</sup> 제3자가 제조물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처럼, 잠재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제적 운영자 외에 개인의 행위 및 부작위가 제조물의 하자에 더해 손해의 원인에 기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제조물을 덜 안전하게 만드는 취약성 때문에, 제조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은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경감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의 원인에 부주의하게 기여한 경우,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은 경감되거나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recital 41).

## 다.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제13조)

### (1) 취지

#### □ 면책조항의 당연 무효화<sup>37</sup>

-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이 손해를 입은 자와 관련하여, 계약을 통하여 효력을 배제시키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적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기 위한 EU 차원의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PLD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이나 이용약관에 제조자의 면책조항을 두는 것은 당연 무효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제6조<sup>38</sup>에서 면책특약의 제한을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하고 있음

### (2) 개정안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른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이 손해를 입은 자와 관련하여, 계약 조건 또는 개별 국가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sup>37</sup> 계약 조건을 통해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 보호의 목적은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계약상 특례조항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같은 이유로,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에 금전적 한도를 설정하는 것처럼, 개별 국가 법으로 책임에 제한을 두거나 책임을 배제시킬 수 없어야 한다(recital 42).

<sup>38</sup>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소멸시효(제14조)

### (1) 취지

#### □ 무기한 책임의 불합리성<sup>39</sup>

- 제조물의 특징은 노후화할 수 있다는 점이고, 과학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안전기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무기한 책임을 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조물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으로 그 기간을 한정하고 있음

#### □ 제조물을 재제작한 경우의 시효 기산<sup>40</sup>

- 시장에 출시된 제조물이 해당 안전 요건의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조물이 수정되는 경우라면,
  - 새로운 제조물이기 때문에 제한 기간은 제조물이 상당히 수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
  - 순환경제 하에서 제조물은 다시 제작되거나 리폼(reform)이 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업데이트되거나 업그레이드 될 것이기 때문에 시효에 대한 기산을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 다만, 신체적인 손해에 대한 잠복기로 인하여 구제 절차를 따르지 못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토록 하고있음

<sup>39</sup> 제조물은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화되며 과학과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더 높은 안전기준이 개발됨을 고려하여, 제조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무기한 책임을 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임은 합리적인 기간, 즉,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청구를 침해하지 않고,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이라는 기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배상 가능성을 불합리하게 거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학적 증거에 따라 신체적인 손해의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은 15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recital 43).

<sup>40</sup> 재제작 결과, 해당 안전 요건의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조물이 수정되는 경우처럼, 상당히 수정된 제조물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제조물이기 때문에, 제한 기간은 제조물이 상당히 수정된 때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recital 44).

## (2) 개정안

1. 회원국은 이 지침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하는데 3년의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 이 기간 제한은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의 전부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 (a) 손해;
  - (b) 결함;
  - (c) 제7조에 따른 손해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관련 경제적 운영자를 식별할 것.  
첫번째 단락에서 말한 기간 제한을 중단시키거나 간섭하는 회원국의 법률은 이 지침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회원국들은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 있는 제조물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가 개시되거나, 제7조 제4항에 따라 상당히 수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이 지침에 따른 손해를 입은 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소멸되도록 해야 한다. 단, 청구인이 그 전에 제7조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제적 운영자를 상대로 자국 법원에 법적 절차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기 2의 예외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손해를 입은 자가 신체 손해의 잠복기로 인해 10년 내에 절차를 개시할 수 없었던 경우, 이 지침에 따른 손해를 입은 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15년의 제한 기간이 만료될 때 소멸된다.

## 4. 최종 규정

- 제조물책임 규정에 대해 더욱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 법원들이 다른 법원의 결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조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투명한 조치는 법이 발효되고 6년이 지난 후에 이사회가 수행할 검토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 것임. 아울러 회원국이 개정 PLD를 자국의 환경에 맞게 입법화시기를 정하고 있는 전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가. 투명성(제15조)

#### (1) 취지

-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원의 결정을 공개토록 함
  - 각국 법원이 내린 최종 결정 및 그 외 제조물 하자에 대한 관련 최종 판결을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며,
    - 당사자에게 최종 서면 판결문이 통지된 후 지체없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규정
  - 법원의 이러한 공개조치는 각국의 판결이 일관되고 조화롭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할 것임

## (2) 개정안

1.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개시된 절차와 관련하여 각국 법원이 내린 최종 결정 및 그 외 제조물 하자에 대한 관련 최종 판결을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최종 서면 판결문이 통지된 후 지체없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1의 판결이 포함되어 있는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 나. 시행(제18조)

### (1) 취지

□ 지침(directive)의 성격상 회원국은 법률 등을 통해 반영

- 본 지침은 발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침의 내용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관보에 발행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 많은 회원국들이 1985년 PLD에 따른 제조물책임법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이 제안된 상태이며 앞으로 유럽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 공식적으로 채택될 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참고로, 1985년 PLD는 1968년부터 제조물책임 법리를 통일하기 위한 입법 검토를 시작하였고, 1976년 제1차 지침안이 제안되었고, 1979년부터 각료이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바 있음<sup>41</sup>

### (2) 개정안

1. 회원국은 이 지침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법률, 규정, 행정 규칙을 [OP, 날짜 기입 요망: 이 지침이 발효된 날로부터 12개월 후]까지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법규들은 해당 법규들의 본문을 집행위원회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회원국이 해당 법규들을 채택할 때,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거나 공식 편찬하는 경우 그러한 참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그러한 참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
2. 회원국들은 이 지침이 적용되는 분야에 채택한 자국법의 주요 규정의 본문을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41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2002, 83면.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디지털 및 순환 경제에 따른 규정을 중심으로

---



# V.

##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한계 및 시사점

### 1. 디지털전환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한계

#### □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분야의 포섭

- 결론적으로 EU PLD나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될 당시의 산업환경과 지금의 환경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고,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사용환경이 문서작성이나 인터넷 서핑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임
  -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받는 형태나 클라우드 방식의 접속형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더욱더 큰 변화는 경제활동이나 산업활동에서 인공지능이 구체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임
  -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채택됨으로써 보다 지능화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고 있음

#### □ 인공지능의 블랙박스에 따른 결함 발견의 어려움

- 소프트웨어가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되거나 사용과정에서 문제를 만들 경우에 확인하기 어려우며,
  - 인공지능은 개발자도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음
  - 반면, 인간의 의사결정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인공지능이 채용된 서비스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다름
  - 인공지능이 활용되거나 인공지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쉽지 않음

- 전통적인 제조물책임법리에 따른 경우, 인공지능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물성이 인정되지 않음
  - 소프트웨어는 무체물이기 때문에 매체에 저장되거나 내장된 경우에는 제조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도출되었지만,
    - 동일한 대상이 매체 유무에 따라 달리 보는 것은 논리가 일관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포함시키려는 입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sup>42</sup>
    - 국회심사보고서에 따르면,<sup>43</sup> “현행법상 저장매체(디스켓, CD 등)가 있거나 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제조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단순히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그 자체는 물건성이 없어 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 “소프트웨어 대부분은 현행법상 면책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정의규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

## 2. 개정 PLD가 가져올 시사점

### 가. 제조물의 정의 및 책임범위에 대한 논의의 전환

- 디지털 전환시대의 제조물책임 원칙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관련하여, 그동안의 논의는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성이 있는 지 여부에 집중하면서 제조물책임 법리의 본질은 배제되어왔다고 봄
    -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에 논의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42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제조물’의 정의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포섭하기 어려움.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빈번해질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분쟁 해결이 어려움을 의미함. 가령 자율운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자동차제조사(하드웨어), 자율운행프로그램개발사(소프트웨어), 운전자(소비자) 간 손해배상 책임 분담 등의 분쟁을 해결해 줄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적고 있다.

43 오창석,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정무위원회, 2017.11.

- 물론,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과학기술의 수준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위험의 배제 등을 통하여 제조자가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나 개발위험의 항변은 제조자가 제조물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 및 운용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 확대

- 온라인 플랫폼이나 네비게이션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 이 중,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면책규정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할 것임<sup>44</sup>

나. EU PLD 개정안의 함의 및 대응방안

□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제조물책임 인정

- 인공지능이 포함된 경우라면 제조물성에 관계없이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며, PLD 개정안, 시법안 및 시책임지침안이 상호 연계되어 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책임을 두텁게 지우도록 규정
  - 매체성에 따라 소프트웨어나 AI의 성질이 변한 것은 전혀 없음에도, 매체에 탑재 여부에 따라 제조물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논리적으로도 앓을뿐더러 합리적이지 않다<sup>45</sup>는 점에서 개정안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인공지능이 블랙박스화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을 인간이 확인하거나 제작자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44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자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④ 통신판매중개자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소프트웨어가 “유체물에 담겨져 있다고 하여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제완, 전자거래의 유형에 따른 제조물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한국법제연구원, 2002, 27면.

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임<sup>46</sup>

-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의 진화된 알고리즘은 개발자도 그 성능에 대한 완벽한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사고 발생 시 개발 책임자와 그 소속 회사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어렵다”<sup>47</sup>고 평가하기도 한함

○ EU의 논의는 제조물책임 법리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며,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입법 논의라고 판단되며, EU회원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임

□ EU역내를 대상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 필요

○ EU GDPR이 EU역내에 서비스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해왔듯이, PLD도 EU역내에 서비스되는 사업자나 제조자에게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정부에서도 PLD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통적인 제조물의 영역만이 아닌 서비스와 이들이 융합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

○ PLD를 포함한 각국의 제조물책임 논의는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은 제조물책임법이 추구하는 가치임에도 제조물성에 치중하여 소비자 보호라는 본질적인 내용을 간과했다고 할 것임

- 무엇보다 각국에서 시행하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내 입법적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채택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에 따른 판단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디지털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46 김윤명, 블랙박스를 열기위한 인공지능법, 박영사, 2022, 155면 이하 참조.

47 윤지영 외,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VI), 형사정책연구원, 2015, 97면.

## 참고문헌

## REFERENCES

권오승 외,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2

김윤명, 블랙박스를 열기위한 인공지능법, 박영사, 2022

김윤명·오병철 외, SW제조물책임 관련 법제 현황 조사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김제완, 전자거래의 유형에 따른 제조물 결함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한국법제연구원, 2002

오창석,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정무위원회, 2017.11.

윤지영 외,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VI), 형사정책연구원, 2015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2002

Evaluation of Product Liability Directive, SWD(2018)157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2022.9.2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5791](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5791)

Questions & Answers: AI Liability Directive, 2022.9.2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5793](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5793)

이슈페이퍼 22-21-⑩

##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디지털 및 순환 경제에 따른 규정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F. 044)863-9915

등록번호 1981. 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9-11-92325-87-3 93360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BN 979-11-92325-87-3

비매품